

	등록번호	20120600036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최초등록일	2012-08-13	http://gogumam.co.kr
	최종등록일	2025-01-03	gogoomam@hanmail.net

고 구 맘

정보공개서

영주농업회사법인(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영주농업회사법인(주)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275-34

TEL: 054-638-5955/ FAX : 054-638-5956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054-638-595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및 가맹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직영점 목록 및 주소
2.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영주농업 회사법인 (주)	고구맘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275-34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전화번호 및 팩스
	2011.12.21	2012.01.10	황병성	T. 054-638-5955 F. 054-638-5956
	법인 등록번호	175611-0012563	사업자 등록번호	512-81-1902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사용인	대표 황병성 감사 황미숙	고구맘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275-34	
			황병성	054-638-595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서 직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고구맘	없 음
상 호	고구맘 OO 점	없 음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3005810000 (2014.9.30)
그 밖의 영업표지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재무현황 요약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최근 3 년 동안의 재무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	991,926	785,800	206,126	176,571	-37,681	7,906
2022	989,585	800,000	189,585	172,204	2,041	-16,540
2023	961,691	800,000	161,691	198,410	2,808	-27,894

- 당사의 2023 년귀속 재무현황과 관련하여 현재(2024 년 3 월) 재무제표 미확정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액으로 기재하였으며 2023 년귀속 재무제표 확정시 변경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체명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황병성	대표	2012.01.10~ 현재	영주농업회사법인(주)	사업 총괄
비관련 임원	황미숙	이사사	2012.01.10~ 현재	영주농업회사법인(주)	재무, 감사

7. 가맹본부의 임직원수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고구맘』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당사는 『고구맘』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관리내용	등록 및 등 록신청 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 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간판, 인테리어 시설물 및 판촉, 홍보	출원일 2013.12.2 등록일 2014.9.30	출원번호 4120130049813 등록번호 4103005810000	영주농 업회사 법인(주)	2024.9.30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 정보 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GU MAM™

고구맘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고구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2년 4월 27일입니다.

2. 가맹사업 연혁

당사의 『고구맘』에 대한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 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영주농업회사법인(주)	고구맘	황병성	2012.04.27 ~ 2021.12.29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로 27 (가흥동)
영주농업회사법인(주)	고구맘	황병성	2021.12.30~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275-34

3. 가맹사업 업종

『고구맘』에 대한 가맹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고구맘	제과제빵	파이류, 만쥬류, 통고구마

4. 최근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고구맘』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4	4	0	3	3	0	3	3	0

서울	1	1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3	3	-	3	3	-	3	3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 개년도 말 『고구맘』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당사의 직전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6	0	0	2	0	4
2022	4	0	0	1	0	3
2023	3	0	0	0	0	3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고구맘』 가맹사업 외 현재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타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지역별 연간평균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에 올린 연간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가맹점 수	2023년 연평균 매출액(단위:천원, VAT미포함)						비고
		연평균 매출액		상한 매출액		하한 매출액		
		연평균	3.3㎡당	상한	3.3㎡당	하한	3.3㎡당	
전체	3	77,748	5,070	127,426	12,742	12,106	756	산출:3개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3	-	-	-	-	-	-	5곳미만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가 추정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 (상하 5% 허용오차 있음)가 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역산하여 가맹점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공급액 × 추정비율(1/0.45)]

- 가맹점 운영개월수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와 매출액 관련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자료를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연간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추정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고구맘』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3 개	2,449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고구맘』 가맹사업 관련 연간광고 및 판촉비 내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온라인 등	2023.1~12	0	0	-	-

11. 가맹금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	-------	----	------

우체국 (경북영주우체국)	신사업 추진부	경북 영주시 영주 2 동 423-1	1588-1900 054-639-7014
------------------	------------	------------------------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 예치금액을 당사에서 교부한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맹계약 후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어 예치 가맹금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우체국장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고구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비용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2,200	계약 체결일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정 전 교육비
개정 홍보행사비	₩2,200	계약 체결일	행사 이전 계약해지	행사 진행완료 후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 2,000	계약 체결일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 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 (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 배 이내

- 보증금은 귀하가 당사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이행담보목적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변경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반환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예치가맹금액
합계	₩11,900
가맹비	₩5,500
교육비	₩2,200
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개점 홍보행사비	₩2,200

-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및 금전 지급방법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판, 인테리어 등 기타 비용 (기준: 33 ㎡ (10평) /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지급 대상	총 금 액	3.3 ㎡당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총 계]		-	[58,300]	-	-	-
간판		업체자율	6,600	-	협력업체와 협의결정	협력업체와 협의결정
실내 인테리어			20,900	[2,090]	협력업체와 협의결정	협력업체와 협의결정
주방/매장 설비			25,300	[2,530]	계약시 협의결정	설비 시공전 계약 해지시
초도 물품	소모 품	별첨 2. 참조	2,200	-	계약시 협의결정	물품발주전 계약해지시
	원부 재료		3,300	-	계약시 협의결정	물품발주전 계약해지시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간판은 매장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 인테리어의 3.3 ㎡ 당 가격은 대략 190 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책정되었으며 매장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 귀하는 간판 및 인테리어에 관하여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귀하는 당사가 파견하는 직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 3.3㎡당 22 만원(부가세포함)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주방매장설비는 최소기본설비가 필요하므로 점포 면적당 변동폭이 매우 적어 상기 기재된 평당 단가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증설, 가스공사, 음료냉장고, 소방설비, 철거 및 각종 인·허가비, 어닝, 상하수도 공사, 전면외장 등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당사의 협력업체는 경영환경 등이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정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내	120 만원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후 10 일 이내	240 만원
계약 체결 후 10 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360 만원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고구맘』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영업표지 간판변경비	업체 자율	[6,600] 개별사안별협 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
점포환경 개선	업체 자율	가맹본부분담 비용을 제외 한 나머지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이후 교육비	가맹 본부	기본교육 무 료, 특수사항 실비	교육실시 7 일전	교육실시 3 일전 취소	교육 후 반 환되지않 음	수시교육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주와 협의 산 정	교육실시 7 일전	교육 실시 1 일전 취소	교육 후 반 환되지 않 음	특별 교육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 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실시후 반환불가	-
지연이자	가맹 본부	연 20%	지급기일 다음날부 터 지급 날까 지	-	-	금전지급 기한 경과 시 부담.

- 로열티, 리스료, 재고관리비용, 회계처리비용, 영업지역 보장금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광고분담비에 관하여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이 경우 차액가맹금에는 물류비용과 인건비, 개발비, 홍보비, 관측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서비스상태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 및 취급품목, 실재재고수량조사,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부정기	문의 054- 638-5955
회계처리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 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및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1 년 1 회 이 상 및 요청시	문의 054- 638-5955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갱신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이를 공개하고 재계약 180일에서 90일전 귀하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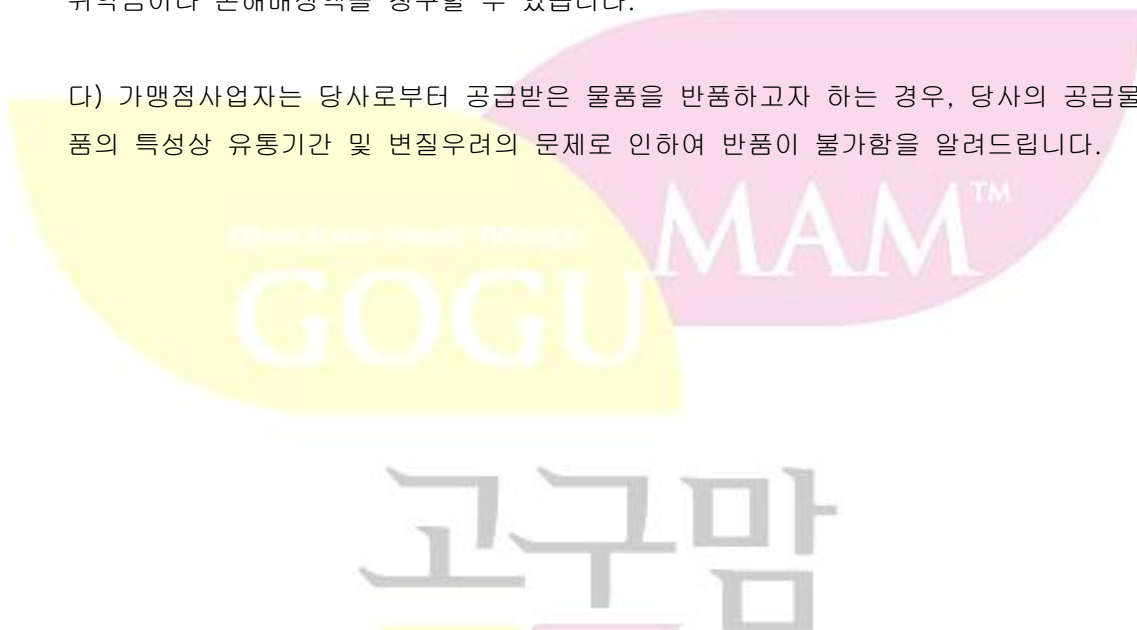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고구맘』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고구맘』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전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품의 특성상 유통기간 및 변질우려의 문제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고구맘』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유, 과일 등 신선도 유지를 위한 재료는 자율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 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별첨 2. 주요품목” 참조요망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고구맘』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1)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고구맘』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나 주선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고구맘』 가맹사업에 있어 특수관계인에 의해 거래를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구맘파이, 고구맘치즈파이, 통팔파이, 모카파이, 백년초파이, 자색빠따뜨, 코코넛빠따뜨, 홍삼빠따뜨, 그린빠따뜨, 호박코코넛만쥬, 고구맘스틱만쥬, 코코넛만쥬, 청룡가렛트, 홍룡가렛트, 고구마가렛트, 홍삼파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3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 승인 시 판매 가능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구맘의 타 가맹점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 별로 왼쪽에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3 회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개당)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파이류	1,600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통지, 홈페이지 공지 등	2024년 3월 기준 (계절 및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 음)
만쥬류	1,600		
가렛트류	1,600		
홍삼파이	1,800		
흑미찰파이	2,400		
사과파이	2,200		
통고구마	2,800		
선물용세트1호	33,000		
선물용세트2호	24,000		
선물용세트3호	13,500		
선물용세트4호	11,000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제과·제빵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고구맘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의 범위를 원칙으로 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조정 통보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고구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고구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직영+기타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수정, 해지

1) 가맹계약의 기간

『고구맘』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갱신시에는 2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 +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1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 다 두텁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 후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3 항	25 조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연속하여 2 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의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31 조 1 항 2 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한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3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 조 1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1조 4항 각호1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1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2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1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 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 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 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 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54-638- 5955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
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서면으 로 승인 요청 → 당사 담당팀 검 토(상속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 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	-	-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위탁 승 인 요청 → 당사 담당팀 검토(위 탁자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 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고구맘』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제한지역	경업허가절차
계약기간 중	『고구맘』과 동일한 컨셉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제과 제빵전문점	국내 전 지역	해당사항 없음 (문의 054-638-5955)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고구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8:00 ~ 22:00 (14시간)	365일 연중무휴(명절 자율)	문의: 054-638-595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성 및 개인적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 영업일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 명 이상 [33㎡ 기준]	직접 근무 권장함	제한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시 매장을 방문하여 청결도, 물품의 사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고구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 담 비 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 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측 50%(1/N)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 담액 제시 → 가맹점 의 행사 참여 결정 → 광고비 납부	1. 대중매체광고 등 광고에 따라 필 요시 분담 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2. 가맹점사업자비 용부담시는 50%이 상 동의시 시행
	브랜드 및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측 50%(1/N)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판촉 행사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차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원칙)		상기와 동일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시또는 동 의점주 대상시행
	개별행사	가맹점 100%부담		해당없음	가맹점단독 판촉행사

-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당사가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이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의 월평균 물품공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금 = \text{계약해지 직전 1년간 당사의 월평균공급액} \times 0.1 \times \text{잔여 개월수}]$$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기간 내 및 계약 해지, 종료 이후의 비밀유지 의무와 계약기간내의 경업금지 의무, 자점매입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당 20만원을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급격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사업자 또는 당사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0 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중 영업개시 이전부담금전 지급방법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54-638-5955)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0	
1 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39	
점포 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최종 개설 협의	D-24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 우체국에 가맹금 예치	D-23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2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공사	-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 주방 및 매장 설비	D-21~2	
교육	- 교육(개정 전 교육)	D-9~3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 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상호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구맘

Ⅶ.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 개선 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u><분할지급 시 절차></u>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 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가맹본부 부담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창업자금관련 대출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매출부진에 따
른 경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고구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조리교육	각종 브레드의 조리 및 포장, 커피 및 음료 조리방법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서비스 및 운영 교육	마인드 교육, 고객관리, 종업원관리, 매출 관리, 현장 open/close 업무 등 운영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고구맘』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교육시간	비고
수시교육	신메뉴 및 필요시 전달교육 등	실습교육	1 일(5~6h)	신메뉴출시 및 필요 시
특별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실습 및 강의 교육	1 일(5~6h)	가맹점주 요청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고구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5 일(25h~30h)	220 만원(VAT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1 일 5 시간 교육기준)
수시 교육	1 일(5~6h)	기본이론교육무료 실비 발생시 청구	신메뉴 및 필요시등
특별 교육	1 일(5~6h)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 점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관리자 등)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맘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 목록 및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해당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평균 영업기간 (단위: 년, 개월)
2023	해당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2. 강제/권장 품목 및 주요품목 공급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3. 인근 가맹점 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